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 4-2-1

규정번호 4-2-1
제정일자 1998.2.6
최근개정 2026.3.23
개정차수 39차 개정
관리부서 교무입학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인사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명지전문대학(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교원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교원의 종류) ① 교원은 고등교육법 14조에 정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 강사와 그 밖의 교원(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0.25., 2019.07.30)

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정년트랙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③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하며, 신규임용 교원은 연봉제를 적용한다. (항신설 2018.12.10.)

④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강의를 담당하는 강의전임교원,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산학협력중점교원, 외국어 강의를 담당하는 외국인교원 등으로 구분하며,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항번호 변경 2018.12.10.)

⑤ 강사는 교육중심으로 교과목에 관한 학생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전업강사, 겸임강사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항신설 2019.07.30)

⑥ 비전임교원은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원, 객원교원, 겸임교원, 특임교수 등을 말한다. (개정 2016.04.26., 2019.07.30) (항번호 변경 2019.07.30.,개정 2021.09.13.,2024.7.2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만 적용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강사, 비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07.30)

제3조(임용시기) (삭제)

제4조(임용기간) ①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신규임용되는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계약에 의해 임용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교원임용심사를 통하여 다음 기간을 적용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교 수 : 정년보장
2. 부 교 수 : 5년
3. 조 교 수 : 5년

4. (삭제 2012.08.27)

② (삭제)

③ 외국인교원에 관하여는 별도의 외국인교원인사시행규칙에 의거 임용한다.

제5조(임용기간 계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은 임용기간만료 이전에 승진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 중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잔여 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남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7.24.)

④ 법인인사규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7.24.)

⑤ 여성교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출산인 경우 당해 직급의 임용기간 계산 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05.16.)

제6조(정년보장 교원의 심사) (삭제)

제6조의2 (삭제)

제6조의3 (삭제)

제7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법인인사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만 65세로 하며 퇴직일은 정년 해당 학기의 말일로 한다.

제8조(임용일자의 소급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 하는 경우

제2장 신규임용

제9조(자격) 법인의 설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법인인사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법인의 설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건전하고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
2.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소지자
3. 법인인사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을 경우에는 석사학위 소지자. 단, 학위과정이 설치되지 아니한 특수한 분야와 외국어회화 등 실기·실습을 위주로 하는 분야는 학사학위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우수한 자

4. 법인인사규정 제23조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9조의2 (직급부여) 신규임용 교원의 직급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 및 교육경력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다.

1. 교수는 15년 이상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17년 이상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갖춘 특수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
2. 부교수는 12년 이상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14년 이상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갖춘 특수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
3. 조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에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는 1년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갖춘 자
4. (삭제)

제9조의3(연구 및 교육경력년수 환산) ① 교원의 교육, 연구 및 산업체 경력년수는 별표2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동일기간내에 둘 이상의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인정 환산율이 가장 큰 것 하나만 인정하고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조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경력년수의 환산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임용시기 및 방법)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매 학년도 3월1일과 9월1일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분야에 있어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사회적 공헌도가 뚜렷한 자에 대한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법인인사규정 제7조의 6을 준용한다.

③ 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신규임용전형지침에 의한다.

제11조(임용 및 전형절차) 총장은 법인인사규정 제7조의5 규정에 따라 임용유자격자를 선정하고 다음의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임용 제청한다.(개정 2016.05.16.)

1. 자격심사 : 최소 응모자격 요건심사로 교수초빙 공고 시 제시된 기본적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신설 2016.05.16.)
2. 교내심사 : 자격심사 적격자에 대한 개인별 제출서류와 연구실적물의 전공 적합 여부 및 양적 수준에 대하여 심사한다.(신설 2016.05.16., 개정 2022.02.21)
3. 외부심사 : 지원자의 연구실적물의 질적수준 및 전공적합성 여부를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심사한다.(신설 2016.05.16.)
4. 면접심사(개정 2016.05.16.)
   가. 교내 및 외부심사 결과를 참작하여 면접대상자 선정 위원회에서 임용예정인원의 3~6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6.05.16.)

나. 면접대상자에 대하여는 세미나 또는 시험강의와 연구자세, 인품 등 교수로서의 자질을 면접 심사한다.(개정 2016.05.16.)

5.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총장은 면접심사를 거쳐 3배수의 임용대상자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제11조의2(임용계약) 신규임용 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용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계약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근무기간 :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가. 교 수 : (삭제)

나. 부 교 수 : (삭제)

다. 조 교 수 : (삭제)

라. (삭제)

2. 급여 : 법인보수규정 및 우리대학 보수규정시행규칙에 의한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
3. 근무조건 : 주당 강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진로상담, 산학협력, 취업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계약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신원조사 및 학·경력조회) ① 이사장에게 제청된 임용대상자 중 임용내정자가 결정 통보되면 총장은 즉시 내정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보안업무규정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뢰하고 기타 학·경력사항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신원조사결과 신원특이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경력 조회결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임용 후에도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의2(심사결과의 공개) ① 임용절차 종료 후 지원자가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공개한다.

② 심사결과의 공개범위는 지원자의 단순한 합격 또는 불합격 뿐만아니라 심사점수, 가부판정, 등급 등을 공개대상으로 하되 지원자 및 심사위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결과 공개절차는 신규임용에 지원한 자가 원하는 경우에 신규임용자가 확정된 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결과를 공개한다.

제3장 승진임용

제13조(자격 및 요건) ① 정년보장 교원을 제외한 교원의 승진은 법인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 및 제규정이 정하는 복무의 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라

야 한다.

② 승진소요연수는 법인인사규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한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타 대학(교)의 동일 직명 이상에서의 경력연수를 합산 인정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있는 자의 승진 최저소요연수

   조 교 수 → 부 교 수 : 6년

   부 교 수 → 교　　수 : 5년

2. 박사학위 없는 자의 승진 최저소요연수

   조 교 수 → 부 교 수 : 6년

   부 교 수 → 교　　수 : 9년

③ 교원승진 임용은 승진 소요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교수업적평가 기준점수의 심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수업적평가 기준

   가. 일반형 : 전임교원

구 분	소요년수	교육	연 구			봉사	산 학	
			이공	인문·사회	예·체능		이공	인문,사회 예·체능
부교수에서 교수	5	3000	700	600	600	1350	1350	1000
조교수에서 부교수	6	3600	900	850	850	1620	1620	1200

   나. 산학협력 트랙형 :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트랙형을 선택한 교원

구 분	소요년수	교육	연 구			봉사	산 학	
			이공	인문·사회	예·체능		이공	인문,사회 예·체능
부교수에서 교수	5	1600	600	400	400	600	2800	2600
조교수에서 부교수	6	2100	750	450	450	750	3600	3300

2. 박사학위가 없는 경우 교육, 봉사, 산학부문은 승진기간 소요년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연구부문은 제3항 제1호를 적용한다.

④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을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5.16.)

1. 연구실적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 이상의 게재논문 200%를 충족하여야 하며 단독 또는 제1저자가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6.05.16.)
2. 국제저명학술지 게재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1.25배의 가중치를 부여한다.(신설 2016.05.16.)
3. 예체능계열의 연구실적물은 승진임용기간에 최소 한 차례 이상 독창회, 독주회, 개인 전시회, 개인 작품발표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6.05.16., 개정 2024.7.24)
4.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05.16.)

⑤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의2(연구실적물 인정범위) ①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2조의 평가절차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연구실적물은 우리대학 소속이 명시되어야 하며, 동일한 내용을 다른 학회지나 논문집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승진소요기간내에 재임용을 받은 경우 사용한 연구실적물은 승진임용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의3(삭제)

제14조(승진제한) ① 법인인사규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연구년 및 파견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제한 또는 유보한다.

②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개정 2024.7.24.)

③ 법인인사규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이 연구, 수업, 학생지도 또는 근무상태가 불량한 경우는 승진임용을 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 (삭제 2001.12.17)

제15조(승진임용시기) 교원의 승진임용은 법인인사규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 학년도 3월1일과 9월1일에 시행한다.

제16조(임용 및 심사절차) 총장은 매 학기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를 심사평정하고, 그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승진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6.05.16.)

1. 교수업적평가 심사평정

교무처장은 승진대상자의 승진소요 기간내의 교수업적종합평가표를 작성하고 교수업적평가규정 따라 이를 심사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2. 연구실적물 심사평정

가. 교무처장은 승진대상자의 승진소요 기간내의 연구실적물을 승진예정일의 3개월전까지 제출받아 내부 또는 외부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이를 심사할 수 있다. 단, 교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친 국제저명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 및 한국연구재단등재지(후보)에 게재된 연구실적물은 심사에서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05.16.)

나.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와 동일 전공관련 분야의 교원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내부심사는 우리대학의 3인(부교수이상) 이상을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학부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한다. 외부심사는 외부대학에서 추천한 2인(조교수 이상)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한다.(개정 2016.05.16., 2017.07.14)

다. 연구실적물의 심사평정은 각 편이 심사위원 2/3 이상이 “우”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16.05.16.)

라. 전항 “다”의 요건을 충족한 연구실적물은 인정기간 이내에 한하여 차기 승진임용심사

때에 재심사없이 인정할 수 있으며, 전항 “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차기 승진임용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않는다.(신설 2016.05.16.)

3.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이의신청 및 재심사는 교수업적평가규정 제8조의2 절차에 따른다.

4.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심사한 교수업적평가결과를 심의한다.

제16조의2 (삭제)

제16조의3(재심사) ① 승진임용심사에 관한 임용 및 심사절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승진임용 업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다음연도(1년후) 업적평가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5.16., 2017.10.25)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해당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함은 물론 승진지체기간에 해당하는 업적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③ (개정 2016.05.16., 삭제 2017.10.25)

제4장 재 임 용

제17조(자격 및 요건) ① 교원의 자질함양과 교육 및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용기간 내에 연구실적 및 교수업적을 엄정히 심사 평정하여 재임용을 제청한다.(개정 2016.05.16.)

② 법인인사규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의 직명별 재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교원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11조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수 : 정년보장
2. 부교수 : 5년
3. 조교수 : 5년
4. (삭제)
5. 외국인교원 : 직명에 상관없이 외국인교원인사시행규칙에 의거 임용한다.

③ 교원의 재임용은 법인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 및 제규정이 정하는 복무의 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재임용은 임용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교수업적평가 기준점수의 심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수업적평가 기준

가. 일반형 : 전임교원

구 분	소요 년수	교육	연 구			봉사	산 학	
			이공	인문·사회	예·체능		이공	인문,사회 예·체능
부교수	5	3000	700	600	600	1350	1350	1000
조교수	5	2820	700	660	660	1350	1350	1000

나. 산학협력 트랙형 : 산학협력중점교원 및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트랙형을 선택한 교원

구 분	소요 년수	교육	연 구			봉사	산 학	
			이공	인문·사회	예·체능		이공	인문,사회 예·체능
부교수	5	1600	600	400	400	600	2800	2600
조교수	5	1800	750	450	450	450	3000	2700

2. 신임교수 및 부교수 재임용 평가기준

구 분	교육	연 구			봉사	산 학	
		이공	인문·사회	예·체능		이공	인문·사회 예체능
신임교수(3년)	1620	300	300	300	810	810	600
신임부교수(3년)	1620	370	330	330	810	810	600

3. 연구실적물 인정범위는 제13조의 2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의2(재임용시기) 교원의 재임용은 매 학년도 3월1일과 9월1일에 시행한다.

제18조(임용 및 심사절차) ① 재임용 심사절차는 제16조 규정을 적용한다. 단, 연구실적물 제출 기한은 재임용예정일의 4개월전까지로 한다.(개정 2016.05.16.)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임용제한) ① 임용기간 만료일 현재 휴직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복직하지 아니하거나 장기 국외여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재임용 할 수 없다. 다만, 연구년 및 파견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재임용이 유보된다.

② (삭제)

제19 조의2(재임용 심사) ① 재임용대상 교원이 제17조의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재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며, 재심사는 다음연도(1년후) 업적평가시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임용 신청자는 해당직급별 재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함은 물론 재임용 지체기간시 해당하는 업적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년을 유보하여 조교수 7년차에 부교수 승진자격을 가진다.(개정 2016.05.16.)

② 동조 제1항의 재임용 기간에 요구되는 업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직을 제청한다.(개정 2016.05.16.)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탈락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장 정년보장

제19조의3(정년보장임용 심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우리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 기준에 따라 정년보장 여부를 심사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의4(정년보장임용 요건)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 대상자는 법인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관계법령 및 제규정이 정하는 복무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최초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으로서 이 규칙 제1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대상자로서 이 규칙 제13조 제3항의 승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정년보장 임용교원의 정수) ①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대학전체 전임교원 법정정원(재학생기준)의 100분의 35 이내로 한다.

② (삭제)

③ 정수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정년보장 임용의 교원 수가 100분의 35를 초과한 경우, 총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매학기 정년보장 임용 교원의 수를 정할 수 있다.(신설 2015.12.14.)

제19조의6(정년보장 교원의 의무) ①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된 교원도 교수업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매학년도 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년보장교원은 다양한 교육·연구·봉사 및 산학활동을 통하여 본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7(정년보장임용 대상자 선정 방법) 제19조의5에 따라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개정 2016.05.16.)

1. 우선순위 기준

평가항목	가중치
1. 교육업적평점 순위	40%
2. 산학업적평점 순위	30%
3. 연구업적평점 순위	20%
4. 봉사업적평점 순위	10%

2. 우선순위 기준점수는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1조부터 제13조의2까지 규정에 따라 최대점수를 1순위로 반영하여 평가한다.(개정 2024.7.24.)
3. 교육 및 봉사, 산학업적은 승진소요시간의 업적을 년 단위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반영한다.
4. <삭제(2024.10.21.)>
5. 우선순위 평가결과 동순위의 경우 부교수 승진일 순위로 정하며, 부교수 승진일도 동일한 경우 교육업적총점, 산학업적총점, 연구업적총점, 봉사업적총점 순위 순으로 정한다.(신설 2016.05.16., 개정 2024.10.21)

제6장 보직임용

제20조(보직) ① 모든 보직의 임용은 법인인사규정 제9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라 보임하되 직무의 직무요건과 보임대상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② 부총장은 교수 또는 동등 이상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학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사무직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보임한다. 단,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이사회에 내신하여 이사장이 보임한다.(개정 2025.12.1.)

1. 실·처·단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본부장과 학술정보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교목실장은 목사자격을 소지한 교원으로 보하며, 기획실장, 사무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5.12.1.)
2. 부실·처·단·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5.06.15., 2015.11.23., 2015.12.03., 2018.08.27.,2025.3.31., 2025.12.1.)

③ (삭제)

④ 부속기관장, 부속교육기관장, 부설연구소장, 부설센터소장, 학과장 및 주임교수 등의 보직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임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단, 제2항의 보직은 제외한다.

제7장 겸직제한

제21조(겸직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규정을 준용하여 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타 기관에 상근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19.12.09.)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2. 교내 교원창업 승인자(개정 2026.3.23.)
3. 상장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사외이사(신설 2019.12.09.)
4. 기타 겸직 직무가 필요한 경우(신설 2026.3.23.)

제22조(겸직허가절차 및 조건) ① 겸직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겸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 겸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말까지로 한다.

② 타 기관 겸직을 원하는 교원은 교무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겸직허가원을 제출한다. 다만, 상임으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교내 교원창업 승인자에 대하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9.12.09., 개정 2026.3.23.)

④ 사외이사 겸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외이사겸직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한다.

⑤ 제21조 각호에 따라 겸직하는 교원은 그 해에 해당 겸직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당해연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겸직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교무처를 통하여 총장에게 익년 1월 말일까지 제출·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3.23.)

1. 해당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신설 2019.12.09.)

제23조(외부출강) ① 교원이 외부출강을 희망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에 비상임직으로 위촉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초, 중, 고등학교 및 사설학원 등에는 출강할 수 없다.

제8장 휴·복 직

제24조(휴직) 법인인사규정 제25조 규정에 의해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원과 함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7.02.27.)

1. 의병휴직은 종합병원의 진단서
2. 법정의무를 위한 휴직은 법정의무 발생 또는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
3. 국외유학,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의 고용 및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구로 인한 휴직은 초청장, 고용계약서 등

제25조(휴직교원의 신분)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6조(휴직과 근속통산) ① 법인인사규정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통산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국가기관 추천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국외기관에 근무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26조 제1항외의 휴직기간은 2분의 1의 비율로 근속기간에 통산한다.

제27조(휴직기간 만료 및 복직)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교원은 자동 면직된다.

제9장 명예퇴직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10장 보 칙

제32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법인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3조(상·벌) 교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법인인사규정과 법인표창규정에 의한다.

제3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 제규정 및 법인정관, 법인인사규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을 준용 또는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 제17조 제2항은 1997년 9월 1일 이후 승진 및 재임용 대상교원부터 적용한다.

③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종전에 사용하던 우리대학 교원인사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제13조 및 제14조는 2002년 4월 1일 이후 승진임용 대상교원부터 적용한다.

③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박사과정미설치분야교수승진에관한특례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08년도(1년) 유예기간으로 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행 전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 제13조 제3항 제1호 및 제17조 제4항 제1호는 교수업적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2008년도 승진 및 재임용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 2009년 3월 1일 이후 승진 및 재임용 대상교원부터 적용하되, 연구부문 업적점수는 승진소요기간 연구실적을 적용하고, 교육업적 및 봉사업적 점수는 평가기간에 맞추어 균등 환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교수업적평가 시기 변경에 따라 2008년 2월 이전에 임용된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은 해당연도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1>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22> <생략>

<23>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②, 제6조의2①, 제9조의3③, 제11조, 제11조2호·3호, 제11조의2의6호, 제12조①, 제16조, 제16조1호·3호, 제20조②·③·④, 제21조, 제22조②, 제23조①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24> - <102>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제19조의 2 ①항의 재임용 심사는 2008년 재임용 해당교원부터 적용하고, 제13조 ③항 및 제17조 ④항의 교수업적평가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학칙) <2010.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15> <생략>

<16>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5 ①항, ②항 중 “계열”을 각각 “학부”로, 제20조 ③항 중 “계열부장”을 각각 “학부장”으로 한다.

<17> - <49>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 제19조의5, 제19조의7은 2011년도 승진자 부터 적용하며, 5년 초과 기간의 평가방법은 교육 및 봉사, 산학업적 점수는 최근 5년 업적점수로 평가하고, 연구업적은 해당직급 임용기간(초과기간 포함)의 업적점수를 평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의 승진 및 재임용 해당년도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승진 최저 소요년수 및 교수업적평가 승진·재임용 해당년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이 시행규칙 2010년 10월 1일 이전 4월과 10월에 승진한 전임교원은 승진 최저 소요년수가 1개월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대상이 되는 당해 3월과 9월에 승진최저 소요년수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2. 별표1의 승진 및 재임용 해당년도 기준 중 산학협력트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2년 9월 1일 이전에 조교수로 임용한 교원(2012년 7월 1일 조교수로 임용한 교원은 제외)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기준은 2012년 8월 27일 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2012년 7월 1일 전에 전임강사로 임용하여 2012년 7월 1일 조교수로 임용한 교원의 재임용 기간은 5년이며 부교수 승진 소요기간은 최초 전임강사로 임용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 이에 필요한 교수업적평가 기준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하되, 제13조 제④항은 2015년 3월 1일자 승진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되, 제20조 제②항은 201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03. 부칙 개정>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201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제13조 제4항은 2018년 3월 1일자 승진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제13조 제4항은 2018년 3월 1일자 신규 승진임용 심사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1조의2제6항, 제5조제3항·제4항, 제13조제4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9의7제2호)

부 칙

①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19조의7제1호·제4호·제5호)

② (경과조치) 2025년 3월 1일자 정년보장임용 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직제규정) <2025.3.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3> (생략)

<4>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4-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보직) ②항의 “평생교육원장”을 “평생교육본부장”으로 한다.

<5> - <17>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0조제2항제1호·제2호)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1조제2호·제4호, 제22조제3항·제5항)

<별표 1>

승진 및 재임용 해당년도 기준

1. 승진임용 기준

가. 정교수 승진임용(부교수→정교수)

구 분	교육	연 구			봉사	산 학	
		이공	인문 · 사회	예 · 체능		이공	인문 · 사회, 예 · 체능
2012학년도	2400	700	600	600	1080	540	400
2013학년도	3000	700	600	600	1350	810	600
2014학년도	3000	700	600	600	1350	1080	800
2015학년도	3000	700	600	600	1350	1350	1000

※ 2016학년도부터 정교수 승진임용 점수요건은 2015학년도와 동일함.(박사학위가 없는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산학협력 트랙형은 별도로 정한다.

나. 2012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한 조교수의 부교수 승진임용(2012년 7월 1일 임용한 조교수 제외)

구 분	교육	연 구			봉사	산 학	
		이공	인문 · 사회	예 · 체능		이공	인문 · 사회, 예 · 체능
2013학년도	2400	600	550	550	1080	810	600
2014학년도	2400	600	550	550	1080	1080	800

※ 2015학년도부터 부교수 승진임용 점수요건은 2014학년도와 동일합니다.

※ 산학협력 트랙형은 별도로 정한다.

2. 재임용 기준

가. 부교수

구 분	교육	연 구			봉사	산 학	
		이공	인문 · 사회	예 · 체능		이공	인문 · 사회, 예 · 체능
2012학년도	2160	700	600	600	1080	540	400
2013학년도	3000	700	600	600	1350	810	600
2014학년도	3000	700	600	600	1350	1080	800
2015학년도	3000	700	600	600	1350	1350	1000

※ 2016학년도부터 부교수 재임용 점수요건은 2015학년도와 동일합니다.

※ 산학협력 트랙형은 별도로 정한다.

나. 2012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한 조교수(2012년 7월 1일 임용한 조교수 제외)

구 분	교육	연 구			봉사	산 학	
		이공	인문 · 사회	예 · 체능		이공	인문 · 사회, 예 · 체능
2013학년도	1620	400	360	360	810	810	600

※ 2014학년도부터 조교수 재임용 점수요건은 2013학년도와 동일합니다.

※ 산학협력 트랙형은 별도로 정한다.

다. 2012년 7월 1일에 임용한 조교수

교육	연 구			봉사	산 학	
	이공	인문 · 사회	예 · 체능		이공	인문 · 사회, 예 · 체능
1200	300	300	300	540	540	400

※ 산학협력 트랙형은 별도로 정한다.

<별표 2>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표

번 호	경 력 내 용	환 산 인정율
1	학력 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2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관할청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3	육. 해. 공군사관학교의 학술교관으로 근무한 경력	70-100
4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5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 단,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70%를 넘지 못한다.	30-70
6	중고등학교 교원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교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70
7	대학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교육조교로 근무한 경력	70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운동부 포함)및 대학의 경기지도자	70
9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5년까지 인정한다.	100
10	석사학위 취득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3년까지 인정한다.	100
11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2년까지 인정한다.	100
12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한자로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자	학위취득의 70
13	관할청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 포함)를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경력	100
14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관할청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0
15	민간산업체가 설치한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70-100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표

번 호	경 력 내 용	환 산 인정율
16	대학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 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100
17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0-100
18	대학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100
19	공과계 대학(공업교육대학,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자로서 관할청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70-100
20	대학 전공분야를 기타 관할청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70
21	대학 신문학과 졸업자로서 언론기관에서 기자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22	판사·검사, 변호사·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력	70-100
23	외국 공관에서 해당전공에 부합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	70-100
24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25	세무사·공인감정사·토지평가사·변리사, 기술사로 근무한 경력	70-100
2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기타 관할청장관이인정하는 병원의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70
27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관할청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사 또는 연구강사로 근무한 경력	70
28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 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 간부	70
29	국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병원, 기타 관할청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 간호원으로 근무한 경력	70